

의안번호	제 호	의결사항
의결 연월일	20 . . (제 회)	

어선법시행령일부개정령안

제출자	국무위원 ○○○ (해양수산부장관)
제출연월일	20 . .

법제처 심사 전

1. 의결주문

어선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2. 제안이유

어선건조·개조업 등록제 시행('25.12.21.)에 대비하여 어선건조·개조업 등록 업자가 등록 사항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사항에 대한 변경 등록을 하지 않았을 경우 부과하는 과태료의 기준을 정하기 위함

3. 주요내용

가. 어선법 시행령 별표 2 과태료의 부과기준(제19조 관련) 중 제2호 개별기준에 마의2를 신설하여 변경등록 의무 위반 횟수 별 과태료 부과 금액을 정함

4. 주요토의과제

없 음

5.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 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OOOO부 등과 합의되었음

라. 기 타 : 1) 신·구조문대비표, 별첨

- 2) 입법예고(40일간) 결과, 특기할 사항 없음
- 3) 행정규제 : 규제심사 사전심의 요청 중

대통령령 제 호

어선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어선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2 제2호에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위반행위	근거 법조문	과태료 금액		
		1차 위반	2차 위반	3차 이상 위반
마의2. 법 제9조제3항을 위반하여 변경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어선건조·개조업을 한자	법 제53조제1항 제5호	100	200	300

부 칙

이 영은 2026년 12월 21일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 어선법 시행령 [별표 2] > <u>과태료의 부과기준(제19조 관련)</u> 2. 개별기준					< 어선법 시행령 [별표 2] > <u>과태료의 부과기준(제19조 관련)</u> 2. 개별기준				
위반행위	근거 법조문	과태료 금액			위반행위	근거 법조문	과태료 금액		
		1차 위반	2차 위반	3차 이상 위반			1차 위반	2차 위반	3차 이상 위반
가. 법 제3 조의2 제4항 또는 제 5항을 위반하 여 복원 성에 관 한 자료 를 선장 에게 제 공하지 않거나 어선 안 에 비치 하지 않 은 경우	법 제53 조제2항 제1호	25	50	100	가. 법 제3 조의2 제4항 또는 제 5항을 위반하 여 복원 성에 관 한 자료 를 선장 에게 제 공하지 않거나 어선 안 에 비치 하지 않 은 경우	법 제53 조제2항 제1호	25	50	100
나. 법 제4 조제2 항을 위 반하여 만재흡 수선을 초과하 여 사 람, 어 획물 또	법 제53 조제1항 제1호	100	200	300	나. 법 제4 조제2 항을 위 반하여 만재흡 수선을 초과하 여 사 람, 어 획물 또	법 제53 조제1항 제1호	100	200	300

현행					개정안				
는 화물 등을 승 선 또는 적재하 고 항행 한 경우 다. 정당한 사유 없 이 법 제5조 제2항 을 위반 하여 무 선설비 를 작동 하지 않 은 경우	법 제53 조제1항 제2호	100	200	300	는 화물 등을 승 선 또는 적재하 고 항행 한 경우 다. 정당한 사유 없 이 법 제5조 제2항 을 위반 하여 무 선설비 를 작동 하지 않 은 경우	법 제53 조제1항 제2호	100	200	300
라. 정당한 사유 없 이 법 제5조 의2제1 항 본문 을 위반 하여 어 선위치 발신장 치를 작 동하지 않은 경 우	법 제53 조제1항 제3호	100	200	300	라. 정당한 사유 없 이 법 제5조 의2제1 항 본문 을 위반 하여 어 선위치 발신장 치를 작 동하지 않은 경 우	법 제53 조제1항 제3호	100	200	300
마. 정당한 사유 없 이 법 제5조 의2제3 항을 위 반하여 어선위 치발신	법 제53 조제1항 제4호	100	200	300	마. 정당한 사유 없 이 법 제5조 의2제3 항을 위 반하여 어선위 치발신	법 제53 조제1항 제4호	100	200	300

현행					개정안				
장치의 고장 또는 분실 신고를 하지 않 거나 고 장 또는 분실 신 고 후 어선위 치발신 장치의 수리 또 는 재설 치 등의 조치를 하지 않 은 경우					장치의 고장 또는 분실 신고를 하지 않 거나 고 장 또는 분실 신 고 후 어선위 치발신 장치의 수리 또 는 재설 치 등의 조치를 하지 않 은 경우				
<신 설> 바. 법 제1 5조 본 문을 위반하 여 선 박국적 증서등 을 어 선에 갖추어 두지 않고 어선을 항행하 거나 조업에 사용한 경우	법 제53 조제2항 제2호	25	50	100	마의2. 법 제9조 제3항 을 위반 하여 변 경등록 을 하지 아니하 고 어선 건조· 개조업 을 한자	법 제53 조제1항 제5호	100	200	300
사. 법 제1 6조 제1	법 제53 조제2항	25	50	100	바. 법 제1 5조 본 문을 위반하 여 선 박국적 증서등 을 어 선에	법 제53 조제2항 제2호	25	50	100

현행					개정안				
항을 위반하여 어선의 명칭등을 표시하지 않거나 어선번호판을 붙이지 않은 경우	제3호				갖추어 두지 않고 어선을 항행하거나 조업에 사용한 경우				
아. 법 제17조에 따른 변경등록을 신청하지 않은 경우	법 제53조제2항제4호		5	1	사. 법 제16조제1항을 위반하여 어선의 명칭등을 표시하지 않거나 어선번호판을 붙이지 않은 경우	법 제53조제2항제3호	25	50	100
1) 10일 이내의 기간이 지난 때									
2) 10일을 초과한 경우에는 5만원에 추가하여 1일을 초과할 때 마다					아. 법 제17조에 따른 변경등록을 신청하지 않은 경우	법 제53조제2항제4호		5	1
1) 10일 이내의 기간이 지난 때									
2) 10일을 초과한 경우에는									
자. 법 제19조제1항에 따	법 제53조제2항제5호		5						

현행			개정안		
른 등록 의 말소 를 신청 하지 않 은 경우 1) 10일 이내의 기간이 지난 때 2) 10일 을 초 과한 경우 에는 5만원 에 추 가하 여 1 일을 초과 할 때 마다 차. 정당한 사유 없 이 법 제19조 제3항 에 따른 어선번 호판과 선박국 적증서 등을 반 납하지 않거나 분실 등 의 사유 를 신고 하지 않 은 경우	법 제53 조제2항 제6호	1 5 1	5만원 에 추 가하 여 1 일을 초과 할 때 마다 자. 법 제1 9조제1 항에 따 른 등록 의 말소 를 신청 하지 않 은 경우 1) 10일 이내의 기간이 지난 때 2) 10일 을 초 과한 경우 에는 5만원 에 추 가하 여 1 일을 초과 할 때 마다 차. 정당한 사유 없 이 법 제19조 제3항 에 따른 어선번	법 제53 조제2항 제5호 법 제53 조제2항 제6호	5 1 5 1

현행			개정안		
1) 10일 이내의 기간이 지난 때 2) 10일 을 초 과한 경우 에는 5만원 에 추 가하 여 1 일을 초과 할 때 마다 카. 정당한 사유 없이 법 제2 1조제1 항에 따른 어선검 사를 받지 않은 경우 1) 10일 이내의 기간이 지난 때 2) 10일 을 초 과한 경우 에는 5만 원에	법 제53 조제2항 제7호	5 1	호판과 선박국 적증서 등을 반 납하지 않거나 분실 등 의 사유 를 신고 하지 않 은 경우 1) 10일 이내의 기간이 지난 때 2) 10일 을 초 과한 경우 에는 5만원 에 추 가하 여 1 일을 초과 할 때 마다 카. 정당한 사유 없이 법 제2 1조제1 항에 따른 어선검 사를 받지 않은 경우	법 제53 조제2항 제7호	5 1

현행					개정안				
추가하여 1일 을 초과할 때마다					1) 10일 이내의 기간이 지난 때 2) 10일 을 초과한 경우에는 5만원에 추가하여 1일 을 초과할 때마다				
타. 법 제26조의2 제1항 을 위반하여 하역설비의 제한하중등의 확인을 받지 않은 경우	법 제53조제2항 제7호의 2	25	50	100					
파. 법 제26조의2 제3항 을 위반하여 제한하중등의 사항을 위반하여 하역설비를 사용한 경우	법 제53조제2항 제7호의 3	25	50	100	타. 법 제26조의2 제1항 을 위반하여 하역설비의 제한하중등의 확인을 받지 않은 경우	법 제53조제2항 제7호의 2	25	50	100
하. 법 제29조를 위반하여 어선 검사증서·어선특별 검사증	법 제53조제1항 제8호	25	50	100	파. 법 제26조의2 제3항 을 위반하여 제한하중등의 사항을 위반하여 하역설	법 제53조제2항 제7호의 3	25	50	100

현행					개정안				
서 또는 임시항 행검사 증서를 어선 안 에 갖추 지 않고 어선을 항행하 거나 조 업에 사 용한 경 우					비를 사 용한 경 우				
거. 법 제3 1조의5 에 따른 어선중 개업의 휴업· 폐업· 재개 또 는 휴업 기간 연 장 신고 를 하지 않은 경 우	법 제53 조제2항 제9호				하. 법 제2 9조를 위반하 여 어선 검사증 서·어 선특별 검사증 서 또는 임시항 행검사 증서를 어선 안 에 갖추 지 않고 어선을 항행하 거나 조 업에 사 용한 경 우	법 제53 조제1항 제8호	25	50	100
1) 휴업 한 날, 폐업 한 날, 재개 한 날 또는 휴업 기간 만료 일(이 하 "휴 업일			20		거. 법 제3 1조의5 에 따른 어선중 개업의 휴업· 폐업· 재개 또 는 휴업 기간 연 장 신고 를 하지 않은 경 우	법 제53 조제2항 제9호			
					1) 휴업 한 날,			20	

현행			개정안		
등"이라 한다)부터 1개월 미만의 기간이 지난 경우			폐업한 날, 재개한 날 또는 휴업기간 만료일(이하 "휴업일등"이라 한다)부터 1개월 미만의 기간이 지난 경우		
2) 휴업일등부터 1개월 이상 6개월 미만의 기간이 지난 경우		50			
3) 휴업일등부터 6개월 이상의 기간이 지난 경우		100	2) 휴업일등부터 1개월 이상 6개월 미만의 기간이 지난 경우		50
너. 정당한 사유 없이 법 제31조의7에 따른 보수 교육을 받지 않은 경우	법 제53조제2항 제10호		3) 휴업일등부터 6개월 이상의 기간이 지난		100

현행			개정안		
1)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수교육을 받아야 하는 날(이하 "교육일"이라 한다)부터 1개월 미만의 기간이 지난 경우		20	경우 너. 정당한 사유 없이 법 제31조의7에 따른 보수교육을 받지 않은 경우	법 제53조 제2항 제10호	
2) 교육일부부터 1개월 이상 3개월 미만의 기간이 지난 경우		30	1)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수교육을 받아야 하는 날(이하 "교육일"이라 한다)부터 1개월 미만의 기간이 지난 경우		20
3) 교육일부부터 3개월		50	2) 교육일부부터 1개월		30

현행			개정안		
이상 6개월 미만 의 기 간이 지난 경우 4) 교육 일부 터 6 개월 이상 의 기 간이 지난 경우 다. 법 제3 1조의9 제2항 을 위반 하여 손 해배상 책임의 보장에 관한 사 항을 설 명하지 않거나 관계 증 서의 사 본이나 관계 증 서에 관 한 전자 문서를 발급· 제공하 지 않은 경우 1) 어선	법 제53 조제2항 제11호	100	이상 3개월 미만 의 기 간이 지난 경우 3) 교육 일부 터 3 개월 이상 6개월 미만 의 기 간이 지난 경우 4) 교육 일부 터 6 개월 이상 의 기 간이 지난 경우 다. 법 제3 1조의9 제2항 을 위반 하여 손 해배상 책임의 보장에 관한 사 항을 설 명하지 않거나 관계 증	법 제53 조제2항 제11호	50 100
		30			

현행			개정안		
중개업자가 법인이 아닌 경우		70	서의 사본이나 관계 증서에 관한 전자문서를 발급·제공하지 않은 경우		30
2) 어선 중개업자가 법인인 경우			1) 어선 중개업자가 법인이 아닌 경우		
			2) 어선 중개업자가 법인인 경우		70

< 의안 소관 부서명 >

해양수산부 어선안전정책과	
연 락 처	(044) 200 - 5553